

의안번호	2200945
의 퇴 인	민형배의원
회 답 일	2024.8.22.
추계번호	24D1293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¹⁾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분쟁조정협의회 및 시·도 협의회를 설치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4억 1,880만원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0억 9,400만원(연평균 4억 1,88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국비+지방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안 제19조)	223.8	223.8	223.8	223.8	223.8	1,119.0	223.8
조정원 협의회	33.4	33.4	33.4	33.4	33.4	167.0	33.4
시·도협의회	190.4	190.4	190.4	190.4	190.4	952.0	190.4
서면실태조사 실시 (안 제31조)	195.0	195.0	195.0	195.0	195.0	975.0	195.0
서면실태조사	25.0	25.0	25.0	25.0	25.0	125.0	25.0
시·도서면실태조사	170.0	170.0	170.0	170.0	170.0	850.0	170.0
합 계	418.8	418.8	418.8	418.8	418.8	2,094.0	418.8

주: 합계 중 국비는 2억 9,200만원, 지방비는 시·도협의회 설치 및 시·도지사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소요비용인 18억 200만원임

- 1) 안 제2조(정의)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정보제공, 소비자의 청약 전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등의 거래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등을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계약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 불공정한 중개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18조(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협약 체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19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를 두고,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의무규정
4	안 제3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31조(서면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계약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등)	×	미대상 표준계약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구용역 예산 내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18조(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협약 체결)	×	미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체결 시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그러나 현재 협약제도 시행 중인 타법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직권조사 면제 등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지원시책 마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14조(협약이행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기준)에 따르면, 협약이행 평가 최우수 등급 평가 시 직권조사 2년 면제, 법인·개인 대상 위원장 이상 표창 수여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3	안 제19조(분쟁조정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4	안 제3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미대상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조사인력을 투입하여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5	안 제31조(서면실태조사)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조정원 협의회 및 시·도 협의회 설치(안 제19조)

(1) 조정원 협의회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원 협의회를 두는 경우 정부 출연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황) 최근 3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 및 연간 개최회의수, 예산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음

[표 2] 6개 분쟁조정협의회 현황: 2021~2023년

(단위: 명, 건, 백만원)

	위원 수	조정신청사건 처리건			연간 전체회의 개최횟수			연간 소요예산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공정거래분쟁조정 협의회	7	1,054	922	1,267	16	12	12	19	23	23
가맹사업거래분쟁 조정협의회	9	483	425	575	11	11	16	24	31	3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9	863	678	929	11	14	19	29	31	31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9	25	28	26	2	2	8	11	11	11
약관분쟁조정협의회	9	427	214	278	11	6	9	13	31	31
대리점분쟁 조정협의회	9	84	62	76	8	5	7	13	18	18
합 계	52	2,936	2,329	3,151	59	50	71	109	145	145
평 균	9	489	388	525	10	8	12	18	24	24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2024.6)

- (위원 수) 조정원 협의회 위원수는 기존의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수 (위원장 포함) 평균인 9명의 위원으로 가정
- (회의수당) 회의수당은 기존의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사례를 준용하여 위원장 40만원, 위원은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연간 회의 개최횟수) 연간 회의 개최횟수는 기존의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사례를 참조하여 전체회의는 10회(9명)로 가정하며, 소회의는 6회(3명)로 구분함
 - 안 제21조에서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회의”)로 구분하고 있음
 - 전체회의 개최횟수는 연간 10회로 가정함(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3개년 평균인 10회로 가정)
 - 소회의 개최횟수는 연간 6회로 가정함(2023년 기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간 소회의 5회,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간 소회의 7회의 평균인 6회로 가정)
- (소요비용) 협의회 설치 시 소요비용은 연간 3,340만원으로 추정됨
 - (전체회의) 2,800만원(위원장 1명×40만원×10회 + 위원 8명×30만원×10회)
 - (소회의) 540만원(위원 3명×30만원×6회)

[표 3] 조정원 협의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전체회의	28.0	28.0	28.0	28.0	28.0	140.0
소회의	5.4	5.4	5.4	5.4	5.4	27.0
합 계	33.4	33.4	33.4	33.4	33.4	167.0

(2) 시·도 협의회

-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 협의회를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위원 수 및 위원수당) 시·도 협의회의 위원 수는 조정원 협의회와 동일하게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함

- (회의수당) 회의수당은 기존의 6개 분쟁조정협회의의 사례를 준용하여 위원장 40만원, 위원은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연간 회의 개최횟수) 각 시·도 협회의의 조정신청건수는 전국 조정신청건수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6개 분쟁조정협의회 중 비교적 조정신청건수가 작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최근 3년간 회의 개최횟수 평균인 4회로 가정함
- (소요비용) 시·도 협의회 설치 시 소요비용은 연간 1억 9,040만원(17개 시도×(1명×40만원×4회+30만원×8명×4회))으로 추정됨

[표 4] 시·도 협의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시·도 협의회 설치	190	190	190	190	190	952

나. 서면실태조사 실시(안 제31조)

-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한 결과 매년 1억 9,5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면실태조사 중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와 유사한 사례인 가맹분야 및 대규모유통업 분야 서면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인 2,500만원²⁾과 동일하게 매년 2,500만원으로 추정함
 - 시·도지사의 서면실태조사는 시·도별로 1,000만원으로 가정하여, 17개 시도의 합계는 1억 7,000만원으로 추정

2)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및 대규모유통업 분야 서면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500만원씩 편성되어 왔음. 2023년부터는 실태조사 예산을 각각 7,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회에서 실태조사 응답률 제고 지적에 따라 대면조사 비용을 각각 5,000만원씩 증액한 결과임

[표 5]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서면실태조사	25	25	25	25	25	125
시·도지사 서면실태조사	170	170	170	170	170	850
합 계	195	195	195	195	195	975

다. 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조정원 협의회 및 시·도협의회를 설치하고,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4억 1,880만원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0억 9,4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국비+지방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조정원 협의회	33.4	33.4	33.4	33.4	33.4	167.0
시·도협의회 (지방비)	190.4	190.4	190.4	190.4	190.4	952.0
서면실태조사	25.0	25.0	25.0	25.0	25.0	125.0
시·도지사 서면실태조사 (지방비)	170.0	170.0	170.0	170.0	170.0	850.0
합 계	418.8	418.8	418.8	418.8	418.8	2,094.0

주: 합계 중 국비는 2억 9,200만원, 지방비는 시·도협의회 설치 및 시·도지사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소요비용인 18억 200만원임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assembly.go.kr